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목 차>

1. 철강재 품질관리 절차 및 시험기준 신설
2. 콘크리트 품질관리 시험 강화
3. 구조물 기초 지지력 시험 강화
4.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시험빈도 상향
5. 공사감독자 등의 품질관리 역할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최보훈
	담당부서 (과)	건설안전과		직급	주무관
	국장	이상일		연락처	044-201-3580
	과장	신윤근		이메일	poo0124@mail.g o.kr

2022. 11. 03.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철강재 품질관리 절차 및 시험기준 신설											
	2.규제조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3.위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1.29 ~ 2022.12.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 건설현장의 주요 자재인 강재 및 콘크리트 등의 양질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 업무지침 내용을 일부 개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검증(비KS 등) 철근 및 중국산 저품질 H형강 등 건설 구조 핵심자재인 철강재의 품질에 대한 우려 제기 - 미검증 철강재 사용은 불법이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저품질 자재 반입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절차 구체화 필요 											
	7.규제내용	<p>○ 철강재 품질관리 절차 구체화 및 시험기준 추가(지침 제56조, 제57조, 별표2, 별지 제15호 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 등 강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절차 구체화 및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등 기록물 보관 의무 명시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중 ‘철강구조물공사’에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 ‘가설기자재’에 ‘H형강 말뚝’ 시험 추가 - 철강재에 대한 KS 인증 여부 확인 또는 비KS 자재에 대한 시험·검사 여부 확인 등 자재 점검표 마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p>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전국 건설회사</td> <td>약 8만개 회사(종합 2만, 전문 6만)</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건설기술인</td> <td>약 101만명</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국 건설회사	약 8만개 회사(종합 2만, 전문 6만)	이해관계자	건설기술인	약 101만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국 건설회사	약 8만개 회사(종합 2만, 전문 6만)											
이해관계자	건설기술인	약 101만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p>○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철근 등 강재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강재가 반입·사용되고, 이로 인해 견실한 시공을 유도</p>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해당없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align="center"><u><신 설></u></p> <p><u><신 설></u></p>	<p align="center"><u>제6편 철강 자재 품질관리</u></p> <p><u>제55조(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 ① 현장에 반입된 강재(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강재)에 관한 시험종류, 시험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확인 방법은 이 업무지침,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u></p> <p><u>②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인수검사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송장(운송차량 번호 등 포함)</u> <u>2. 현장 반입 일자</u> <u>3. 종별, 규격, 수량</u> <u>4. 품질확인서류 [Mill Sheets, Certificate of Conformance(C of C) 등] 및 기타 해당공사 시방서의 요구사항</u> <u>5. 인수자 및 입회자</u> <u>6. 그 밖에 지정사항 등</u> <p><u>③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반입된 자재의 품질확인서가 없거나 해당공사시방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u></p>

현 행	개 정 안
	<p>못하는 경우 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54조에 따른 현장점검 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며, KS인증을 받지않은 제품(이하 ‘비KS 제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험종류, 시험빈도·횟수 및 방법, 시험성적서상 시험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포함하여 건설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과 관련된 점검표, 품질시험 기록 등을 사업이 준공되어 계약문서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관될 때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현장 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시편 채취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56조(기록물 보관 등) ①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의 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계약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에 서류의 비치 및 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서류 2. 자재 품질관리 및 품질확인 관련 서류 <p>②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서」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의 서류가 건설공사 준공 시 계약문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 포함할지 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 (철강재) 미검증(비KS 등) 철근 및 중국산 저품질 H형강 등 건설 구조 핵심자재인 철강재의 품질에 대한 우려 제기

* (5.12 서울경제) 원자재값 급등에 안전 뒷전...저가 미인증 철근 나뉜다
(6.3 매일경제) “공사장이 위험하다”...품질 낮은 중국산 H형강 편법 수입 논란

- 미검증 철강재 사용은 불법*이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저품질 자재 반입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절차 구체화** 필요(철강협회 건의)

* KS 인증자재 또는 시험을 통해 검증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건설기술진흥법), 영업정지 2개월(건설산업기본법)

** 품질관리규정 관련 철강협회, 건설기술연구원, 품질협회 등과 협의('21.12~'22.8)

나. 정부개입 필요성

○ 토목 및 건축시설물의 튼튼한 건설, 내구연한 증진 등을 위해서는 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규제대안2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해당없음	해당없음
규제대안2	해당없음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품질협회, 한국철강협회, 품질연구회 및 레미콘 협회 등	'21.12.~'22.07, 의견 수렴(메일 등) 및 간담회 실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협의, 반대의견 없음	의견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건설현장에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품질규정(시방서, 한국산업표준 등) 등에 명시된 적합한 자재를 반입·사용하여야 하며,
 - 시공회사 및 공사감독자 등은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해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입회), 합격한 자재만을 사용
 - 저품질 철강재 반입 사용 근절을 위해 철강재 관리 절차 및 시험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다른 대안은 없음

3. 규제목표

- 건설공사 현장내 철강재 및 콘크리트 등 부적합한 자재 반입·사용 근절하고, 튼튼한 구조물 건설을 위해 품질 관리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레미콘과 강재는 상호 장·단점을 보완하는 자재로서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에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강재에 대한 KS 인증자재 사용 여부,

비KS 자재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품질시험 여부를 확인토록 품질시험·검사 및 기록물 보관상태, 자재 점검표를 마련하여 건설 현장에 양질의 강재가 반입·사용되도록 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구조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철근 등 강재의 품질확보가 매우 중요한 실정므로, 시공사와 공사감독자가 함께 사용자재 확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간 경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대상이 될 수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 현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상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를 기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
④ 대상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 및 전문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제57조에 따라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상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방법·절차를 규정 - 철강재 또한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주요 건설자재·부재로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할 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대상이 될 수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네거티브 유형의 규제사항 아님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 아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해당없음>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해당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원인으로는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및 불량 건설자재 사용 등이며,
- 시방서 또는 설계기준 등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구조물 내구수명을 단축 및 갑작스러운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건설현장의 품질은 매우 중요
- 따라서, 시공회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포함)은 양질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규제 의 집행 가능성

○ 행정적 집행 가능성

- 설계도서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현장에서 품질 확보 및 자재를 관리토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절차 이행 가능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등은 설계내역에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재정적 집행 가능

IV. 추진 계획 및 종합 결론

1. 추진 경과

- 레미콘 품질관리 전반의 문제점과 관행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건설업계, 제조업계 등과 T/F팀을 구성·운영(‘20.11~’21.01)
- 건설공사 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발표*(‘21.3.)
- * 원자재 품질 확보, 제조업체 관리감독 및 건설현장 품질 강화 등
- 철강재 및 콘크리트 품질관리 규정 관련 한국철강협회, 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건설품질협회 등과 협의(‘21.12~’22.8)

- 레미콘 품질강화를 위한 T/F 구성·운영(22.4.~)
-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22.8.9.)
 - * 사고원인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대비 60% 내외로 품질관리 문제 지적
 - 철강재 품질시험 기준 마련 및 콘크리트 품질시험 횟수 증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

2. 향후 평가계획

-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 및 추가 반영 필요 시 적극 검토할 계획임

3. 규제 정비계획

- 레미콘 공장 점검과 관련, 시멘트 및 혼화재 저장설비의 식별표시, 운전실의 현장배합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점검토록 수정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레미콘 점검 시 시멘트 및 혼화재 식별표시 확인 등 점검내용 현실화	'23년 1월

4. 종합결론

- 건축물 또는 토목 시설물 등의 내구성 향상 및 공용중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용 자재의 품질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 특히,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근 등 강재는 콘크리트와 함께 건축물의 기둥, 보 등에 사용중이며, 교량 및 터널 등 토목 시설물의 중추적 역할
-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 양질의 품질확보 및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계자(시공회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가 품질 관련 관계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등에 따라 품질

관리를 하고자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규제라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해당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해당없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콘크리트 품질관리 시험 강화							
	2.규제조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3.위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11.29 ~ 2022.12.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 (추진배경) 건설현장의 주요 자재인 강재 및 콘크리트 등의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 업무지침 내용을 일부 개정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양생前 강도의 척도인 수량(水量) 측정 시험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지침 상 서로 맞지 않는 콘크리트 시험의 빈도를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원화 <p>○ (정부개입 필요성) 토목 및 건축시설물의 건실한 시공, 내구연한 증진 등을 위해서는 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무 시험항목으로 추가된 ‘단위수량 시험’ 의무화 및 빈도 규정 반영 							
	7.규제내용	<p>○ 콘크리트 품질관리 시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수량 시험’ 의무화 및 시험빈도 상향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p>건설현장 시공회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포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전국 건설회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td> <td>약 8만개 회사(종합 2만, 전문 6만)</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국 건설회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국 건설회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약 8만개 회사(종합 2만, 전문 6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p>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양질의 품질확보를 통한 시설물 내구성 확보,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p>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해당없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나. 철근콘크리트공사					나. 철근콘크리트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 포함)	단위수량	한국콘 크리트 학회 제규격 (KCI- RM101)	·필요시	정전용량법 또는 단위용적질 량법 또는 고주파가열 법 또는 마이크로파 법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 포함)	단위수량	한국콘 크리트 학회 제규격 (KCI- RM101)	·배합이 다 를 때마다 ·콘크리트 1 일 타설량 이 120세 제곱미터 미만인 경 우 : 1일 타설 량마다 ·콘크리트 1 일 타설량 이 120세 제곱미터 이상인 경 우 : 120세제 곱미터마다	정전용량법 또는 단위용적질 량법 또는 고주파가열 법 또는 마이크로파 법 (판정 :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 ³ 이내)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 콘크리트 양생 前 강도의 척도인 수량(水量) 측정 시험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품질시험기준에 반영

나. 정부개입 필요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및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상 '단위수량 시험'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 (22.9.1.)되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상의 품질시험기준을 표준시방서와 통일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규제대안2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	----	----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대운계기산업,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삼표산업, 하나레미콘, 도로교통연구원	2021.11.26./콘크리트학회회의실/공청회	4가지 측정기법의 정확도 차이로 기준 $\pm 20\text{kg/m}^3$ 의 합부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측정기법의 단일화	(미반영) 제시된 판정기준은 4가지 시험방법 모두에 대해 측정기기의 시험오차 및 레미콘 공장에서의 계량오차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수행된 검증연구를 통해 설정된 것이므로 단위수량 품질 검사에 문제가 없음. 따라서 단위수량 측정기기 선정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발주청, 엔지니어링사, 시공사, 건설기준 관련 단체 등 20여개 기관	2022.03.11./서울시청역 인근 ENA 컴벤션홀/설명회	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므로 현장 실무자들의 단위수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절차 마련	(반영) 매뉴얼 또는 콘크리트학회 제규격을 통해 단위수량 4가지 시험방법에 대한 측정기기의 상세한 운용방법을 제시. 단위수량 시험 절차에 대한 동영상 배포를 통해 현장 관계자들에게 실무 편의성 제공
대운계기산업	2022.08.12.~08.26/행정예고	측정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교정 방법 필요	(반영) 매뉴얼 또는 콘크리트학회 제규격을 통해 단위수량 4가지 시험방법에 대한 측정기기의 검교정 방법을 제시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건설기준(표준시방서) 개정사항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품질시험기준에 반영하는 사항을 별도의 대안 없음

3. 규제목표

- 건설공사 현장내 철강재 및 콘크리트 등 부적합한 자재 반입·사용 근절하고, 튼튼한 구조물 건설을 위해 품질 관리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상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시험 방법 및 빈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를 적용하여 반영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구조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철근 등 강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실정으로, 시공사와 공사감독자가 함께 사용자 재 확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간 경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대상이 될 수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 규정된 품질시험 기준은 KS규정 및 건설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여 품질시험기준을 현행화
④ 대상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 및 전문건설업
⑤ 예비분석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 규정된 245종의 건설자재의 품질시험기준에 대하여 건설기준(단위수량 시험) 및 KS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
⑥ 차등화적용 여부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대상이 될 수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네거티브 유형의 규제사항 아님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 아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없음

○ 타법사례

: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해당없음>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해당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원인으로는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및 불량 건설자재 사용 등이며,
- 시방서 또는 설계기준 등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구조물 내구수명을 단축 및 갑작스러운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건설현장의 품질은 매우 중요
- 따라서, 시공회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포함)은 양질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규제 의 집행 가능성

○ 행정적 집행 가능성

- 설계도서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현장에서 품질 확보 및 자재를 관리토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절차 이행 가능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등은 설계내역에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재정적 집행 가능

IV. 추진 계획 및 종합 결론

1. 추진 경과

- 레미콘 품질관리 전반의 문제점과 관행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건설업계, 제조업계 등과 T/F팀을 구성·운영(‘20.11~’21.01)
- 건설공사 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발표*(‘21.3.)
- * 원자재 품질 확보, 제조업체 관리감독 및 건설현장 품질강화 등
- 콘크리트 품질관리규정 관련 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건설품질협회 등과 협의(‘21.12~’22.8)

○ 레미콘 품질강화를 위한 T/F 구성·운영('22.4.~)

○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22.8.9.)

* 사고원인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대비 60% 내외로 품질관리 문제 지적

2. 향후 평가계획

-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 및 추가 반영 필요 시 적극 검토할 계획임

3. 규제 정비계획

- 레미콘 공장 점검과 관련, 시멘트 및 혼화재 저장설비의 식별표시, 운전실의 현장배합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점검토록 개정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레미콘 점검 시 시멘트 및 혼화재 식별표시 확인 등 점검내용 현실화	'23년 1월

4. 종합결론

- 건축물 또는 토목 시설물 등의 내구성 향상 및 공용중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용 자재의 품질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 특히,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근 등 강재는 콘크리트와 함께 건축물의 기둥, 보 등에 사용중이며, 교량 및 터널 등 토목 시설물의 중추적 역할
-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 양질의 품질확보 및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계자(시공회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 및 레미콘 생산 공장 관계자가 품질 관련 관계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등에 따라 품질 관리를 하고자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규제라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해당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해당없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구조물 기초 지지력 시험 강화								
	2.규제조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3.위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11.29 ~ 2022.12.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 (추진배경) 건설현장 주요 자재의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상 품질시험 내용을 일부 개정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뚝기초의 지지력 확인을 위한 품질시험은 정재하 시험 및 동재하 시험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험빈도가 "필요시"로 규정되어 건축물 및 교량 등 구조물에 따른 품질시험 방법 및 빈도 등을 규정할 필요 - 대형건축물 및 교량 등 100톤 이상의 지지력이 큰 대구경 말뚝에 대한 품질시험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건설현장의 원활한 품질시험을 위해 "양방향 재하시험" 신설 <p>○ (정부개입 필요성) 토목 및 건축시설물의 튼튼한 건설, 내구연한 증진 등을 위해서는 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구조물의 하중을 전담하는 기초말뚝은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시공사, 공사감독자가 함께 현장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합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7.규제내용	<p>○ 구조물 기초 지지력 시험 기준 정비(별표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뚝기초의 정재하·동재하 시험 의무화 및 빈도 규정 :필요시 → 전체 말뚝 수량 1% 이상(100개 미만 시 최소 1개) 등 - 일선 현장에서 지지력이 큰 대구경 말뚝에 대해 많이 쓰이는 '양방향 재하시험*'을 시험 항목에 추가(KS 기준에는 시험방법 기반영) <p>○ 건설현장 시공회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p>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전국 건설회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td> <td>약 8만개 회사(종합 2만, 전문 6만)</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국 건설회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약 8만개 회사(종합 2만, 전문 6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국 건설회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약 8만개 회사(종합 2만, 전문 6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p>○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양질의 품질확보를 통한 시설물 내구성 확보,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p>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해당없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1. 공통					1. 공통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터 과 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터 과 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정 재 하	KS F 2445	·필요시						
						말 뚝 기 초	동 재 하	KS F 2591	·필요시
터 과 기	말 뚝 기 초	정 재 하	KS F 2445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을 실시 ·교량하부구조는 말뚝 250개당 1회 또는 구조물별로 1회 실시 ·건축구조기준을 따른 경우는 전체 말뚝개수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 실시하거나 구조물별로 1회 실시	동재하시험을 선택적으로 적용				
						동 재 하	KS F 2591	·전체 말뚝 개수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건설현장 주요 자재의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상 품질시험 내용을 일부 개정할 필요

- 말뚝기초의 지지력 확인을 위한 품질시험은 정재하 시험 및 동재하 시험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험빈도가 “필요시”로 규정되어 건축물 및 교량 등 구조물에 따른 품질시험 방법 및 빈도 등을 규정할 필요

- 대형건축물 및 교량 등 100톤 이상의 지지력이 큰 대구경 말뚝에 대한 품질시험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건설현장의 원활한 품질 시험을 위해 “양방향 재하시험” 신설

○ (정부개입 필요성) 토목 및 건축시설물의 튼튼한 건설, 내구연한 증진 등을 위해서는 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할 필요

- 특히, 구조물의 하중을 전담하는 기초말뚝은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 되어야 하며, 시공사, 공사감독자가 함께 현장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합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규제대안2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	----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건설기술연구원, 한국 건설품질협회, 한국 철강협회, 품질연구 회 등	'21.12.~'22.07, 의견 수렴(메 일 등) 및 간담회 실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협의, 반대의견 없음	의견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건설현장에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품질규정(시방서, 한국산업표준 등) 등에 명시된 적합한 자재를 반입·사용하여야 하며,
 - 시공회사 및 공사감독자 등은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해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입회), 합격한 자재만을 사용
 -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말뚝 지지력 확보를 위한 시험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다른 대안은 없음

3. 규제목표

- 토목 및 건축 등 건설공사 현장 내 말뚝 지지력 확인을 위한 시험 빈도를 명확히 하고, 대형건축물 등 지지력이 큰 말뚝에 대한 품질 시험 규정 신설하여 말뚝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말뚝 지지력에 대한 품질시험을 위해 정재하 및 동재하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시험빈도를 “필요시”로 규정하여 건설현장 품질시험 혼란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준 상 명시하고 있는 시험빈도를 품질시험기준에 적용하였으므로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
- 또한, 구조물의 대형화로 인한 말뚝 지지력 확인을 위해 양방향 재하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으로, 건설현장의 구조물의 종류 및 중요도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품질시험 빈도는 “필요시”로 규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구조물의 대형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초 말뚝 지지력 시험 빈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간 경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대상이 될 수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 규정된 품질시험 기준은 KS규정 및 건설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여 품질시험기준을 현행화
④ 대상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 및 전문건설업
⑤ 예비분석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 규정된 245종의 건설자재의 품질시험기준에 대하여 건설기준을 반영
⑥ 차등화적용 여부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대상이 될 수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네거티브 유형의 규제사항 아님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 아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원인으로는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및 불량 건설자재 사용 등이며,
- 지방서 또는 설계기준 등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구조물 내구수명을 단축 및 갑작스러운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건설현장의 품질은 매우 중요
- 따라서, 시공회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포함)은 양질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설계도서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현장에서 품질확보 및 자재를 관리토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절차 이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등은 설계내역에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재정적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말뚝 지지력 시험 빈도에 대한 민원 발생('22.5월), 품질시험 기준 상 시험빈도를 명확히 할 필요
- 또한, 구조물 대형화에 따른 규제건의 접수(100192, '22.8.29.)

2. 향후 평가계획

-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 및 추가 반영 필요 시 적극 검토할 계획임

3. 규제 정비계획

- 레미콘 공장 점검과 관련, 시멘트 및 혼화재 저장설비의 식별표시, 운 전실의 현장배합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점검토록 수정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레미콘 점검 시 시멘트 및 혼화재 식별표시 확인 등 점검내용 현실화	'23년 1월

4. 종합결론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 양질의 품질확보 및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계자(시공회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가 품질 관련 관계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시험빈도 상향								
	2.규제조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3.위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11.29 ~ 2022.12.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한국산업표준(KS) 기준 상 보·차도 콘크리트 블록 시험빈도가 개정되어 한국산업표준(KS)의 정합성을 위해 품질시험 기준 개정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상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기준이 개정되었으나 품질시험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혼란 발생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시험빈도 조정(별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표준(KS) 기준 개정('22.7월)에 맞춰 콘크리트 블록의 시험빈도 상향 조정 - 모든 블록 겉모양·치수 : 10,000개 미만 시 5개 → 10개 등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설현장 시공회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포함)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전국 건설회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td> <td>약 8만개 회사(종합 2만, 전문 6만)</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국 건설회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약 8만개 회사(종합 2만, 전문 6만)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국 건설회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약 8만개 회사(종합 2만, 전문 6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양질의 품질확보를 통한 시설물 내구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해당없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해당없음								

	여부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 규제정비 계획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 도	비 고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 도	비 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419)	보통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개 ·100,000개 미만:10개 ·100,000개 초과 :100,000개마다 5개씩 추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419)	보통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10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2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10개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 두께																	
	투수성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1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419)	투수성블록	휨강도	KS F 4419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1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5개	
		투수계수																	
		유색층 두께																	
		겉모양 및 치수																	
투수성블록	휨강도	KS F 4419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20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40개 ·100,000개 초과 :100,000개마다 20개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419)			투수성블록	투수계수	KS F 4419				·보통블록과 동일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20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4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20개				
	유색층 두께																		
	겉모양 및 치수																		
	휨강도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상 “보·차도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대한 품질시험 방법 및 빈도는 KS F 4419를 따르도록 규정
- 한국산업표준(이하 KS)기준 상 보·차도 콘크리트 블록의 시험빈도가 개정(22.7.18.)되어 KS와의 정합성을 위해 품질시험기준 개정 필요

나. 정부개입 필요성

- (정부개입 필요성)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에 규정
- KS기준 상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대한 시험빈도가 개정되었으나 품질시험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품질시험기준 개정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규제대안2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건설기술연구원, 한국 건설품질협회, 한국 철강협회, 품질연구 회 등	'21.12.~'22.07, 의견 수렴(메 일 등) 및 간담회 실시	개정안 동의	해당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건설현장에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품질규정(시방서, 한국산업표준 등) 등에 명시된 적합한 자재를 반입·사용하여야 하며,
 - 시공회사 및 공사감독자 등은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해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입회), 합격한 자재만을 사용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을 위한 시험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다른 대안은 없음

3. 규제목표

- 건설공사 현장내 철강재 및 콘크리트 등 부적합한 자재 반입·사용 근절하고, 견실한 건설공사를 위해 품질 관리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품질시험기준은 KS기준의 시험방법 및 빈도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KS기준 상의 시험빈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므로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한국산업표준(KS) 내용(보도블록 등)을 반영, 시공사와 공사감독자가 함께 사용자재 확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간 경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대상이 될 수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상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로에 대한 품질관리 방법 및 빈도를 기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
④ 대상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 및 전문건설업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기준 상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방법·절차를 규정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할 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대상이 될 수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네거티브 유형의 규제사항 아님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 아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원인으로는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및 불량 건설자재 사용 등이며,
- 시방서 또는 설계기준 등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구조물 내구수명을 단축 및 갑작스러운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건설현장의 품질은 매우 중요
- 따라서, 시공회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포함)은 양질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설계도서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현장에서 품질확보 및 자재를 관리토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절차 이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등은 설계내역에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재정적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KS기준 상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규정 개정 (“22.7.18.)

2. 향후 평가계획

-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 및 추가 반영 필요 시 적극 검토할 계획임

3. 규제 정비계획

- 레미콘 공장 점검과 관련, 시멘트 및 혼화재 저장설비의 식별표시, 운 전실의 현장배합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점검토록 수정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레미콘 점검 시 시멘트 및 혼화재 식별표시 확인 등 점검내용 현실화	'23년 1월

4. 종합결론

- 건축물 또는 토목 시설물 등의 내구성 향상 및 공용중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용 자재의 품질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 양질의 품질확보 및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계자(시공회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가 품질 관련 관계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사감독자 등의 품질관리 역할 강화								
	2.규제조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조								
	3.위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11.29 ~ 2022.12.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가. 추진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나, 적합성 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품질관리 확인에 소홀할 우려 ○ 레미콘은 건설현장의 주요자재로서 골재, 시멘트 및 혼화재 등에 따라 품질의 저하될 우려가 있어, 지침 상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정기점검 시 공사감독자가 필요 시 입회하도록 규정되어 품질관리에 소홀할 우려 <p>나. 정부개입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 등)에 품질관리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감독자 등의 품질관리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성적서 CALS 입력 여부 확인, 정기점검 동행 등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p>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td> <td>약 356개 건설엔지니어링업체</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약 356개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약 356개 건설엔지니어링업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자재가 반입·사용되고, 이로 인해 견실한 시공을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해당없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 ① ~ ⑤ (생략)</p> <p>⑥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60조 및 제90조, 제139조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확인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태 확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재료의 규격, 공사의 품질 등이 설계서 및 계약서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p> <p>6. 규칙 제5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급한 품질검사 성적서 등이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되었는지 확인</p> <p>7. 규칙 제5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품질검사 대장을 확인</p>
<p>제34조(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①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u>자재공급원을 정기 점검</u>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p>	<p>제34조(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① ---</p> <p>-----</p> <p>-----</p> <p>-----</p> <p>-----</p> <p>----- <u>공사감독자와 함께</u></p> <p><u>자재공급원을 정기점검</u>-----</p> <p>-----</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나, 적합성 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품질관리 확인에 소홀할 우려
- 레미콘은 건설현장의 주요자재로서 골재, 시멘트 및 혼화재 등에 따라 품질의 저하될 우려가 있어, 지침 상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정기점검 시 공사감독자가 필요 시 입회하도록 규정되어 품질관리에 소홀할 우려

나. 정부개입 필요성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 등)가 품질관리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규제대안2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건설기술연구원, 한국 건설품질협회, 한국 철강협회, 품질연구 회 등	'21.12.~'22.07, 의견 수렴(메 일 등) 및 간담회 실시	개정안 동의	해당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건설현장에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품질규정(시방서, 한국산업표준 등) 등에 명시된 적합한 자재를 반입·사용하여야 하며,
 - 시공회사 및 공사감독자 등은 반입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도록 규정할 필요

3. 규제목표

- 건설공사 현장내 철강재 및 콘크리트 등 부적합한 자재 반입·사용 근절하고, 건설한 건설공사를 위해 품질 관리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품질 검사 성적서를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 여부 확인 및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품질검사 대장을 확인토록 하여 불량 자재 사용을 근절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시공사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에서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간 경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대상이 될 수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 현행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상 규정된 공사감독자의 업무를 참고
④ 대상 업종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6조(시공 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에 따르면, 품질관리 시험 빈도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상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역할 중 품질검사에 대한 확인을 명확히할 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대상이 될 수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네거티브 유형의 규제사항 아님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 아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원인으로는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및 불량 건설자재 사용 등이며,
- 지방서 또는 설계기준 등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구조물 내구수명을 단축 및 갑작스러운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건설현장의 품질은 매우 중요
- 따라서, 시공회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포함)은 양질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설계도서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현장에서 품질확보 및 자재를 관리토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절차 이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등은 설계내역에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재정적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레미콘 품질관리 전반의 문제점과 관행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건설업계, 제조업계 등과 T/F팀을 구성·운영('20.11~'21.01)
- 건설공사 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발표*('21.3.)

* 원자재 품질확보, 제조업체 관리감독 및 건설현장 품질강화 등

- 레미콘 품질강화를 위한 T/F 구성·운영('22.4.~)
-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22.8.9.)

* 사고원인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대비 60% 내외로 품질관리 문제 지적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 및 추가 반영 필요 시 적극 검토할 계획임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 규제 신설,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규제자 및 일반국민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해당 법령 또는 타 법령(행정규칙 포함)의 기존규제 중 정비를 추진한 사항(당해년도 및 전년도) 또는 정비계획(1년내)을 구체적으로 기술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별지 제8호서식	레미콘 점검 시 시멘트 및 혼화재 식별표시 확인 등	'23년 1월

업무지침	점검내용 현실화	
------	----------	--

4. 종합결론

- 건축물 또는 토목 시설물 등의 내구성 향상 및 공용중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용 자재의 품질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 특히,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근 등 강재는 콘크리트와 함께 건축물의 기둥, 보 등에 사용중이며, 교량 및 터널 등 토목 시설물의 중추적 역할
-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 양질의 품질확보 및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계자 (시공회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가 품질 관련 관계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